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 규칙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3.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기준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와 같다.

제14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5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

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제32조 중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이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이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이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7조제1항제3호 관련)”을 “(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을 “(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7조제5항 관련)”을 “(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4조제3항”을 각각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17조제1항·제3항”을 “제17조제2항·제4항”으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이용에 관한 규
칙」은 폐지한다.

제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은 제14조의 개정규
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제14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자의 보건·위생·안전 및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 유형별,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 거실

가) 적절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다)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자용 거실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4) 사무실

사무 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신문·잡지 등 입소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서적류를 갖추어야 하고, 텔레비전·공중전화기 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 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정원 10명당 1개,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소변기 각각 1개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3) 급수·배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 정원 300명을 초과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고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한다.

[별표 5의3]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4조제1항 관련)

가. 시설장	1명
나. 사무국장	1명
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
라.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생활지도원 또는 생 활복지사	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2) 입소현원 80명 초과: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
바.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사. 사무원	1) 입소현원 50명 이상: 2명 이상 2) 입소현원 50명 미만: 1명 이상
아. 정신건강전문요원	1)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2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미만: 시설당 1명 이상
자. 작업지도원	1명 이상
차. 조리원	1)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 120명: 4명 이상 3) 입소현원 121명 ~ 200명: 5명 이상 4) 입소현원 201명 ~ 300명: 6명 이상 5) 입소현원 301명 ~ 400명: 7명 이상 6) 입소현원 401명 이상: 8명 이상
카. 위생원	입소현원 150명 이하: 1명 이상 입소현원 151명 ~ 250명: 2명 이상 입소현원 251명 ~ 350명: 3명 이상 입소현원 351명 ~ 450명: 4명 이상 입소현원 451명 이상: 5명 이상

타. 관리인 또는 경비원	1명 이상
파.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소현원당 인력 기준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장 외의 종사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및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모두 겸할 수 있다.
4.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에는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5. 작업지도원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5의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14조제1항 관련)

1. 입소

가.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소 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입소자와 그 보호의무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을 입소시킨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요양생활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 입소자가 적절한 운동, 오락, 교양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3개월 동안은 주 2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칫솔, 세면도구 등은 위생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소자의 외출·외박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안전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외에는 입소자의 외출 또는 외박을 허용해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3. 급식위생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조리원이 작성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상처 등이 있어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건강진단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가목에 따른 진단 결과 전염병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진료 및 투약

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하고, 투약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6. 의료기관의 이용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7. 작업치료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치료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시간·위험성·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의 청소·취사·세탁 등 단순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작업치료 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 작업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라. 작업지도원은 입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작업 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적성에 맞지 않는 작업, 원하지 않는 작업 등을無理하게 시켜서는 안 된다.
- 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작업치료에 따른 입소자의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8. 입소요금 등

-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입소자로부터 입소요금을 받을 수 있다.
-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 다.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정해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 월에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다.
- 라.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사망자의 처리

-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신과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시신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정신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

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다.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 3년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바.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지출보조부: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아.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발송문서: 3년

자.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차. 입소·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작업치료 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10년

카.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년

11. 시설물 관리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수시로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의 흡연은 담당 직원의 감독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각 동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근무자의 지정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각 동(거실이 있는 동으로 한정한다)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관리인·경비원, 간호사 등 근무자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근무자로 하여금 입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세면도구, 끈, 약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구·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 등의 대응방법을 숙지하게 해야 한다.

13. 회계 관리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수익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 입소 및 퇴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

----- 확인해야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제2항-----

----- 제4항-----
----- 제5항-----

----- 발급해야 ----.

<삭 제>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2항-----

----- 제4항-----

-----.

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
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
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
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
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
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
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
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
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
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제32조(자의입원등)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
를 포함한다)하여 -----

---- 제출해야 -----.

1.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
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 발
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
이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
다)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

제33조(동의입원등) -----

-----.

1.·2. (현행과 같음)

3.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이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
이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
다)

②·③ (현행과 같음)